

1. 개정 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계획·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마리나항만에 대한 보안강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규정을 두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고 등 절차·서식 마련

- 마리나선박 정비업 신설에 따른 등록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변경 등록, 지위승계·휴업 및 이용약관 신고요건·절차·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 개정)

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서식 마련(제33조의3 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절차, 발급 신청서·자격증 양식을 신설함

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 보고의무(제32조 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교육계획·실적 및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라. 마리나항만 보안관리 강화(제20조 개정)

-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마.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간소화(별지23조의3 서식 개정)

- 승선신고 항목 중 주소·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연락처를 추가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별표1 및 별표2 개정)

- 행정처분 규정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나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록·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상 가중처분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식별된, 신설·강화 규제(총 2건)에 대한 규제심사 예정

- 신설규제 : 가중처분 전 위반차수 적용기준 설정

- 강화규제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계획 등 보고 의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5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 및 제14호의2서식”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3. 취급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명세, 종사자 현황, 품질 보증조건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4. 작업장 등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여업”을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보관·계류업”을 “정비업”으로 한다.

4.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여업”을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보관·계류업”을 “정비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또는 제2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교육,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12 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이하 “정비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x 4.5cm 사진 1장
4. 대리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정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이전에 발급받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분실의 경우 제외)
3. 기재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기재사항 변경에 한함)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x 4.5cm 사진 1장
5. 대리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사업기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8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시설 조사

결재

등록증 발급

등록증 작성

등록번호 제 호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정비항목

사업장의 위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마리아선박 대여업

변경등록신청서

[]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마리아선박 정비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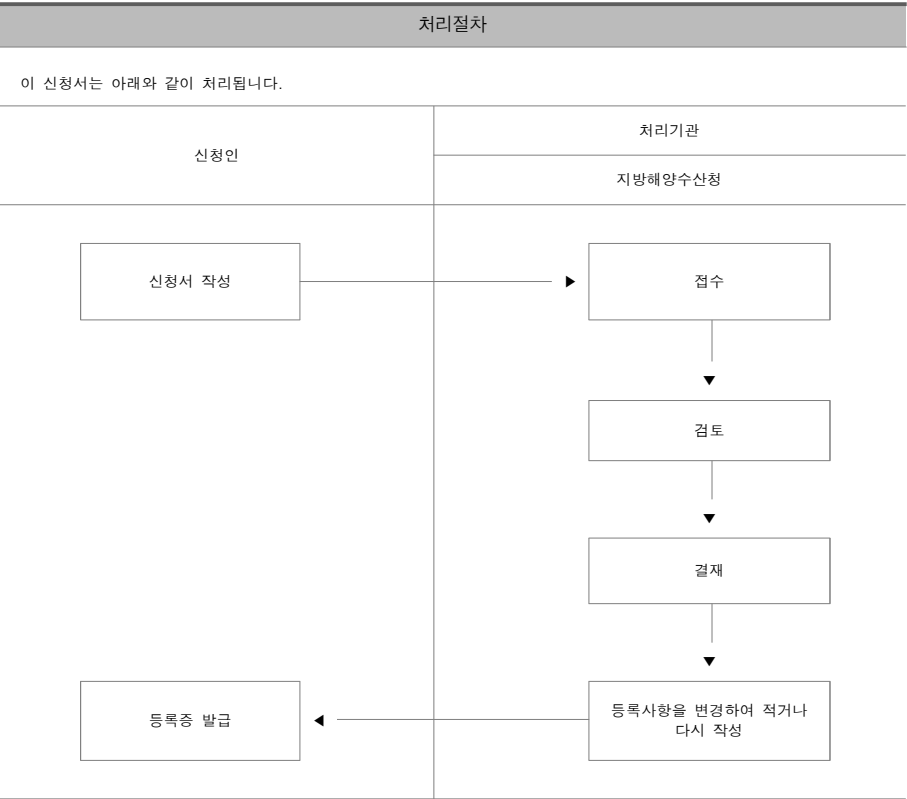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마리아선박

[] 대여업

[] 보관·계류업

[] 정비업

갱신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	유효기간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갱신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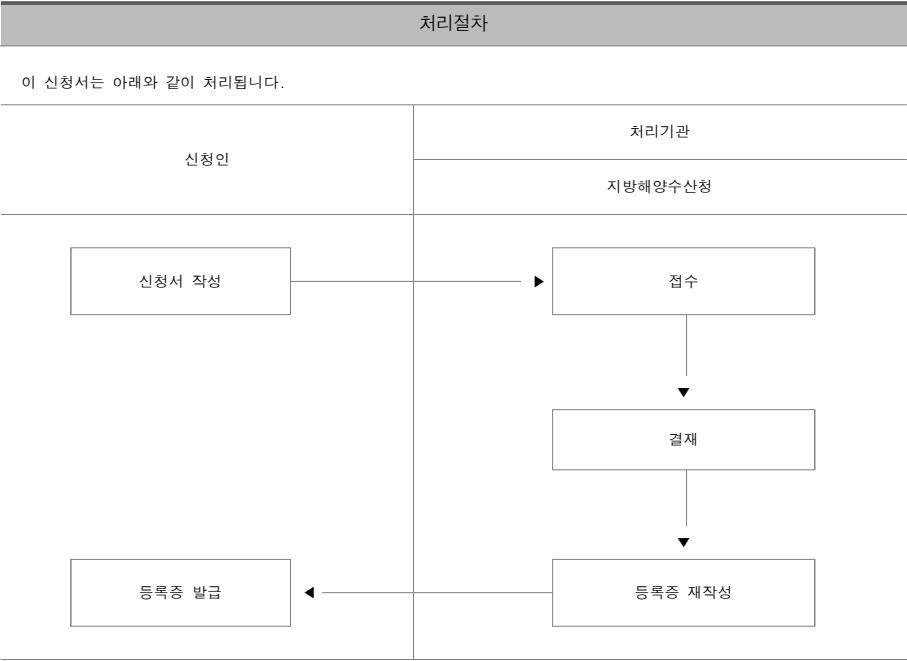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마리아선박

[] 대여업

[] 보관·계류업

[] 정비업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지위 승계(합병) 일자			
지위 승계(합병)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대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종전 등록사업자와 공유자·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증서류(종전 등록사업자가 법 제28조의9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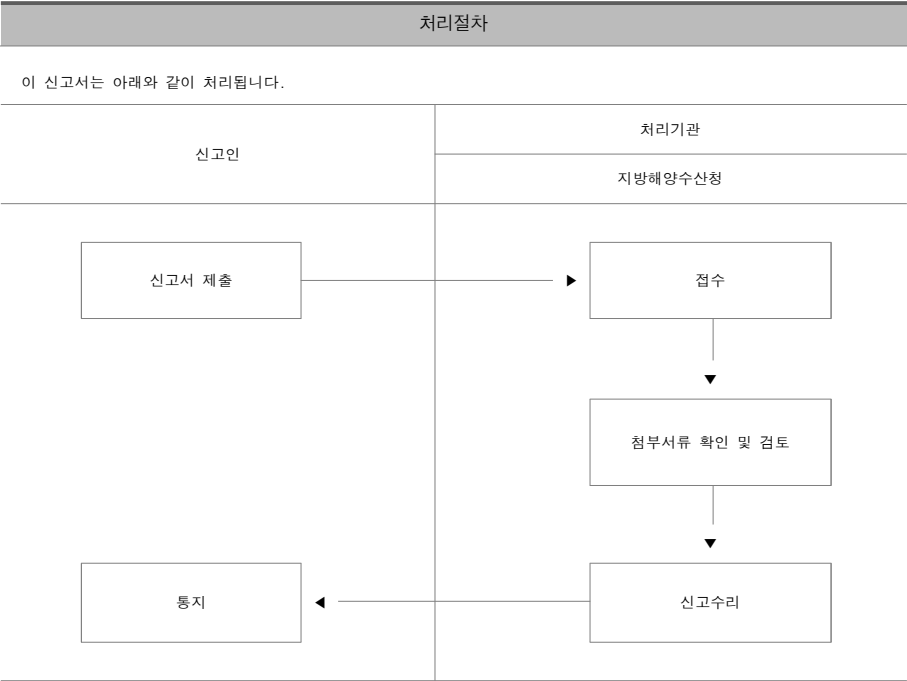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마리아선박 정비업

[]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 날짜
	휴업(폐업·재개업)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마리아선박 정비업 이용약관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정비항목

정비 이용료	(필요시 정비항목별 이용료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그 밖의 이용조건

적용일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승선신고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비항목	
------	--

정비사 교육 이수사항	교육이수 기관 :
	교육이수증 발급번호

경력 사항	정비 분야 종사 경력	근무 사업체명	근무기간
			. . .부터까지
			. . .부터까지
			. . .부터까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
아
지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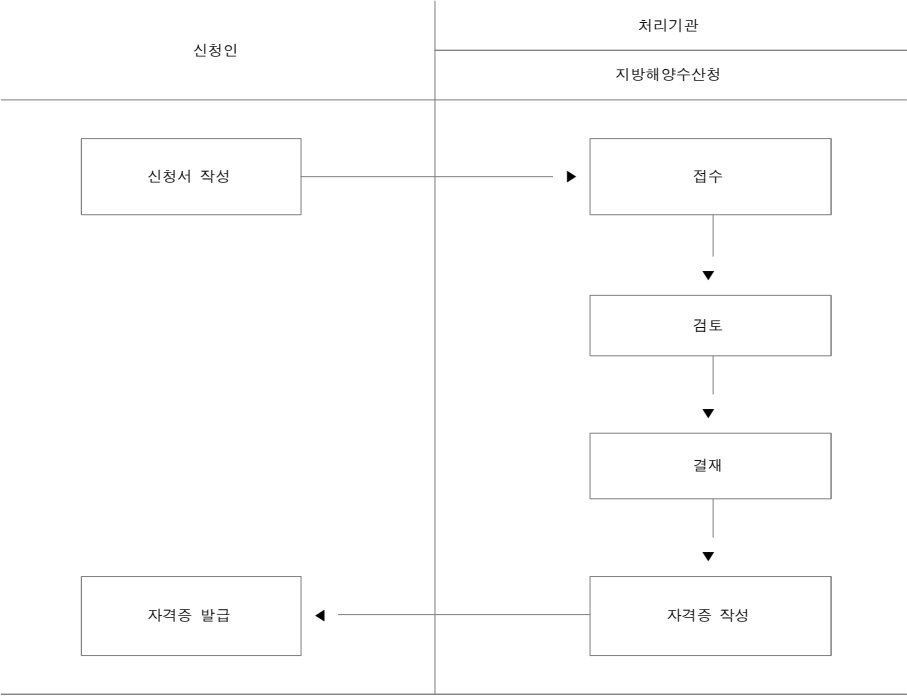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발급한 정비사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3. 정비분야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x 4.5cm 사진 1장	
	5. 대리인 : 위원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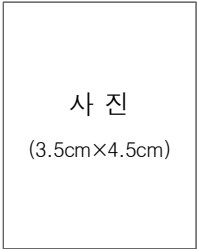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

- 자격번호 :
- 정비항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기재사항 변경 시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비사 자격 재발급 신청 사항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기재 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마리아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이전에 발급받은 마리아선박 정비사 자격증(분실의 경우 제외)	수수료
	3. 기재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류(기재사항 변경에 한함)	없음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x 4.5cm 사진 1장	
	5. 대리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제20조(관리규정)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u>별표 1</u> 제1호 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생략)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별표 1의2</u> ----- -----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3. 취급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명세, 종사자 현황, 품질보증조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작업장 등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 표 1에 따른 마리아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마리아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마리아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아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

-----.

⑤ -----

----- 별 표 1의2-----

-- 별지 제13호서식, 제14호 및 제14호의2서식-----
-----.

제23조(마리아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마리아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아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아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아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

1. ~ 3. (현행과 같음)

4. 마리아선박 정비업 등록증 (마리아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

----- 대여업 등록증,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 정비업 -----
-----.

제24조(마리아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

----- 대여업 등록증, 마리아선박 보관·계류업 -----
----- 정비업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u>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28조의 4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u>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u> 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에 해당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기 3일 전까지 지방해	제26조(마리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 ----- <u>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u> ----- ----- -----

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 --. ----- ----- -----.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u>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u>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 ----- ----- ----- ----- <u>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또는 제21호의2서식</u> ----- ----- -----.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② (생 략)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u>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해야 한다.</u>
<신 설>	④ <u>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상이 변경</u>

<신 설>

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마리나선박 정비사 교육,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이하 “정비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정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

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x 4.5cm 사진 1장

4. 대리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정비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정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이전에 발급받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분실의 경우 제외)
3. 기재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기재사항 변경에 한함)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3.5cm

	<u>x 4.5cm 사진 1장</u> <u>5. 대리인 : 위임장 및 대리인</u> <u>신분증</u>
--	---